

범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하여(은행계좌 편)

타인에게 현금카드 등을 양도한 경우



타인의 의뢰를 받고 은행계좌를 개설한 경우



타인에게 현금카드 및 통장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는 범죄입니다.
또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도 범죄입니다.

당신이 양도한 은행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면 당신 명의의 모든 계좌가 동결되어
사용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현금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 방지에 관한 법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

타인을 위하여 은행계좌를 개설한 경우

사기죄

10년 이하의 징역



ひょうごけん けいさつ
兵庫県 警察

효고현경찰

